죽곡 파노라마 라이프
HUEFORE
협/성/휴/포/레·죽곡

협성휴포레 · 죽곡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문의 053.584-0076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년 11월 27일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수도권 1순위 발생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12회 납입' 으로 완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기존 '무주택세대주'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 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아파트로 분양권 전매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경상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호」및「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21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2015.08.26 이전부터 거주)가 대구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되어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과 37269호(2015.11.2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29-13번지 일원 (대지면적 전체 : 33,279.8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6층, 지상23층 10개동 총 7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31세대 포함)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세대당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 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특공 일반	특공 다자녀	특공 신혼	특공 노부모	일반 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64A	2015001491-01	64.9092A	64.9092	20.2147	85.1239	45.8508	130.9747	33.3799	218	21	21	21	6	149	12
64B	2015001491-02	64.9787B	64.9787	21.2361	86.2148	46.1720	132.3868	33.4157	42	4	4	4	1	29	2
74	2015001491-03	74.8842	74.8842	23.3384	98.2226	52.8969	151.1195	38.5097	42	4	4	4	1	29	2
84A	2015001491-04	84.9613A	84.9613	26.2209	111.1822	60.0153	171.1975	43.6919	118	11	11	11	3	82	6
84B	2015001491-05	84.9533B	84.9533	26.4889	111.4422	60.0096	171.4518	43.6877	21	2	2	2		15	1
84C	2015001491-06	84.9417C	84.9417	26.0872	111.0289	60.3572	171.3861	43.6818	61	6	6	6	1	42	3
84D	2015001491-07	84.9574D	84.9574	26.7050	111.6624	60.3684	172.0308	43.6899	204	20	20	20	6	138	10
106A	2015001491-08	106.9489A	106.9489	31.7346	138.6835	75.5469	214.2304	54.9991	36	·	3	·	1	32	2
106B	2015001491-09	106.9644B	106.9644	32.5566	139.5210	75.5579	215.0789	55.0071	41	·	4	·	1	36	2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안내

구 분	특별 공급	1순위 접수	2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일정(3일간)
일 정	2015.12.02. (수)	2015.12.03. (목)	2015.12.04. (금)	2015.12.10. (목)	2015.12.15. (화) ~ 2015.12.17. (목)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VAT포함)

타입	동	층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10%) 계약시	2차(10%) 2016.01.20	중도금 1회(10%) 2016.06.30	2회(10%) 2016.11.30	3회(10%) 2017.04.30	4회(10%) 2017.09.30	5회(10%) 2018.02.28	6회(10%) 2018.07.30	잔금(20%) 입주지정일
64.9092A	102 104 106	2, 3	20	77,204,048	174,915,952	252,120,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50,424,000
		기준층	172	77,204,048	177,455,952	254,660,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50,932,000
	110	2, 3	4	77,204,048	174,915,952	252,120,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25,212,000	50,424,000
		기준층	22	77,204,048	177,455,952	254,660,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25,466,000	50,932,000
64.9787B	101 107	2, 3	4	77,286,849	178,063,151	255,350,000	25,535,000	25,535,000	25,535,000	25,535,000	25,535,000	25,535,000	25,535,000	25,535,000	51,070,000
		기준층	38	77,286,849	180,633,151	257,920,000	25,792,000	25,792,000	25,792,000	25,792,000	25,792,000	25,792,000	25,792,000	25,792,000	51,584,000
74.8842	103	2, 3	4	89,068,712	201,851,288	290,920,000	29,092,000	29,092,000	29,092,000	29,092,000	29,092,000	29,092,000	29,092,000	29,092,000	58,184,000
		기준층	38	89,068,712	204,781,288	293,850,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58,770,000
84.9613A	105 107 108	2, 3	12	101,054,573	228,255,427	329,310,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65,862,000
		기준층	106	101,054,573	231,575,427	332,630,000	33,263,000	33,263,000	33,263,000	33,263,000	33,263,000	33,263,000	33,263,000	33,263,000	66,526,000
84.9533B	105	2, 3	2	101,044,859	229,035,141	330,080,000	33,008,000	33,008,000	33,008,000	33,008,000	33,008,000	33,008,000	33,008,000	33,008,000	66,016,000
		기준층	19	101,044,859	232,355,141	333,40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66,680,000
84.9417C	101	2, 3	2	101,031,212	227,818,788	328,850,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65,770,000
		기준층	20	101,031,212	231,138,788	332,170,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66,434,000
	103 108	2, 3	4	101,031,212	227,818,788	328,850,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32,885,000	65,770,000
		기준층	35	101,031,212	231,138,788	332,170,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33,217,000	66,434,000
84.9574D	101,103 105,107 108	2, 3	20	101,049,947	229,670,053	330,720,000	33,072,000	33,072,000	33,072,000	33,072,000	33,072,000	33,072,000	33,072,000	33,072,000	66,144,000
		기준층	184	101,049,947	233,010,053	334,060,000	33,406,000	33,406,000	33,406,000	33,406,000	33,406,000	33,406,000	33,406,000	33,406,000	66,812,000
106.9489A	109	2, 3	4	127,206,886	283,553,114	410,760,000	41,076,000	41,076,000	41,076,000	41,076,000	41,076,000	41,076,000	41,076,000	41,076,000	82,152,000
		기준층	32	127,206,886	287,693,114	414,90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82,980,000
106.9644B	105	2, 3	2	127,225,389	286,014,611	413,240,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82,648,000
		기준층	19	127,225,389	290,174,611	417,40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83,480,000
	107	2, 3	2	127,225,389	286,014,611	413,240,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41,324,000	82,648,000
		기준층	18	127,225,389	290,174,611	417,40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83,480,000

▣ 주택형 표시 안내(모집공고, 견본주택, 카달로그, 홍보물 등에 공고상 주택형 대신 약식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 주택형	64.9092A	64.9787B	74.8842	84.9613A	84.9533B	84.9417C	84.9574D	106.9489A	106.9644B
약식 표기	64A	64B	74	84A	84B	84C	84D	106A	106B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생은 죽곡초등학교이며, 중학생은 11개 학교에 분산 배치, 고등학생은 일반계고(광역배정) 및 일반학교(2학군)에 분산 배치됨 • 본 아파트 단지와 차도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인근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향후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인근 송전철탑은 2016년 6월까지 철거하는 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거, 건축과-33698 2015. 10. 29 시행)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의 구획 분할이 불가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빌트인가구 등의 추가선택 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 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는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및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인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무인택배시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주택형	64A	64B	74	84A	84B	84C	84D	106A	106B
금액	10,200,000	12,600,000	11,700,000	14,000,000	15,500,000	14,800,000	11,000,000	16,400,000	16,800,000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제46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설계에 당시 소비자의 선택 및 단열재 설치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음(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구 분	금융기관	계약금	잔금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비	BNK부산은행	100만원	계약금 제외 금액	113-2006-4247-03	국제자산신탁(주) 조용운

▣ 플러스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 플러스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의 공급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 플러스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도이며,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1. 시스템에어컨 (LG)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소	설치위치	판매가	비고
64A,B	실내기 2대	거실 + 안방	3,200,000	
	실내기 3대	거실 + 안방 + 침실2	4,600,000	
	실내기 4대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6,300,000	
74	실내기 2대	거실 + 안방	3,300,000	
	실내기 3대	거실 + 안방 + 침실2	4,800,000	
	실내기 4대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6,600,000	
84A,B,C,D	실내기 2대	거실 + 안방	3,400,000	
	실내기 3대	거실 + 안방 + 침실2	4,900,000	
	실내기 4대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6,700,000	
106A,B	실내기 3대	거실 + 주방 + 안방	5,000,000	
	실내기 4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6,800,000	
	실내기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 침실3	8,200,000	
	실내기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 침실3 + 침실4	9,200,000	

■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는 스탠드형 및 기타 타종의 에어컨을 연결할 수 없음. (천장형 에어컨 옵션행사 가격은 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제조사의 사정,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설치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 됨. •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사항이며 납부일정 및 금액은 플러스 옵션 계약서에 명시됨.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2.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명	모델명	판매가	비고
전주택형	BIS 냉장고(LG)	R-L712JCS	5,1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LG)	R-D222WJNW	1,800,000	
	광파오븐렌지	MZ941CL	600,000	기본 오븐 보상비용 포함
	가스 하이브리드쿡탑(동양매직)	GRA-BH300H	750,000	기본 쿡탑 보상비용 포함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동양매직)	ERA-B31HE	750,000	기본 쿡탑 보상비용 포함
	식기세척기	DWA-7501B	600,000	

3. 안방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크기	품명	판매가	비고
64A	3050*2300*60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000,000	
	3050*2300*60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700,000	
64B	3050*2300*60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000,000	
	3050*2300*60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700,000	
74	2350*2300*60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1,800,000	
	2350*2300*60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500,000	
84A	363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200,000	
	363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900,000	
84B	363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200,000	
	363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900,000	
84C	363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200,000	
	363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900,000	
84D	352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200,000	
	352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900,000	
106A	396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500,000	
	396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2,100,000	
106B	396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슬라이딩)	2,500,000	
	3960*2300*640	침실1 붙박이장(여닫이)	1,900,000	

4. 친환경도료 (두경아이티에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소	판매가	비고
64A,B	거실,주방,침실의 벽체 및 바닥	2,380,000	
74	거실,주방,침실의 벽체 및 바닥	2,740,000	
84A,B,C,D	거실,주방,침실의 벽체 및 바닥	3,100,000	
106A,B	거실,주방,침실의 벽체 및 바닥	3,840,000	

5. 안전방충망 (가디언)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품 명	설치소	갯수	판매가	비고
64A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 침실2,3 발코니1-1,2 주방/식당	6	1,60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1,780,000	
64B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 침실2,3 발코니1-1,1-2 알파룸,주방/식당,현관	8	2,04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270,000	
74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 2,3 발코니 1,2 드레스룸, 주방/식당	8	2,01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240,000	
84A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 2,3 발코니 1-1,2 드레스룸,주방/식당, 알파룸	9	2,43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700,000	
84B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 3,4 발코니 1-1,2 주방/식당, 알파룸, 현관	9	2,38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640,000	
84C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 3,4 발코니 1-1,2 주방/식당, 알파룸,현관	9	2,38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670,000	
84D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 2-1,2 침실3, 발코니 1-1,2 발코니2, 주방/식당	9	2,47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750,000	
106A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 2,3,4 발코니 1-1,2 드레스룸, 주방/식당, 알파룸	10	2,67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960,000	
106B	안전용 방충망 16 Mesh 0.5mm SUS 304L 블랙	거실1,2 침실2,3,4 발코니1-1,2 드레스룸, 주방/식당, 알파룸,현관	10	2,670,000	
	안전용 방충망 14 Mesh 0.7mm SUS 304L 블랙			2,960,000	

6. 단열필름 (후퍼옵티컬코리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크기	품명	판매가	비고
64A	K33	거실+침실 전체	1,190,000	
	C50		1,700,000	
	C70		2,210,000	
64B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160,000	
	C50		1,650,000	
	C70		2,140,000	
74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250,000	
	C50		1,780,000	
	C70		2,320,000	
84A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430,000	
	C50		2,030,000	
	C70		2,630,000	
84B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160,000	
	C50		2,280,000	
	C70		2,960,000	
84C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420,000	
	C50		2,010,000	
	C70		2,610,000	
84D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610,000	
	C50		2,290,000	
	C70		2,970,000	
106A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660,000	
	C50		2,370,000	
	C70		3,090,000	
106B	K33	거실+침실 전체+주방	1,640,000	
	C50		2,330,000	
	C70		3,030,000	

7. 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크기	품명	판매가	비고
64A,B	1200(W)*2300(H)	RAS39 BTM 1SD	900,000	
74	1200(W)*2300(H)	RAS39 BTM 1SD+1FIX	1,100,000	
84A,B,C	1200(W)*2300(H)	RAS39 BTM 1SD	900,000	
84D	1200(W)*2300(H)	RAS39 BTM 1SD+1FIX	1,100,000	
106A	1200(W)*2300(H)	RAS39 BTM 1SD+1FIX	1,100,000	
106B	1200(W)*2300(H)	RAS39 BTM 1SD	900,000	

■ 플러스 유상옵션 관련(추가 선택품목)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계약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 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플러스 유상옵션 계약 체결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방충망의 옵션 선택 시, 기본형 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공 방충망의 보상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선택시, 기본형 쿡탑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공 쿡탑의 보상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및 확장계약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플러스 유상옵션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납부일자는 아파트 분양대금 2차중도금 납부일자와 동일함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구 분	금융기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	BNK부산은행	10%	60%	30%	113-2006-4249-06	국제자산신탁(주) 조용운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미시공되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창호	목재문(문짝,문틀,상부덧판,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경첩 등)	목창호 가틀, 문틀시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바닥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 가구류일체(신발장, 드레스룸장, 수납장, 각종선반),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 선홈통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타일), 발코니벽도장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장), 반자돌림(몰딩포함), 발코니천정도장	천장틀, 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 조명등기구	배관, 배선(스위치, 콘센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욕조틀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거울, 욕실팬, 바닥및벽타일, 욕실폰, 비데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각종선반(주방상하부장 등),벽타일, 수전류(수전),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3구쿡탑)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전기,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신발장, 붙박이장(옵션선택품목포함),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일체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주택형	64A	64B	74B	84A	84B	84C	84D	106A	106B
금액	18,492,300	18,803,440	21,422,340	24,121,630	24,305,540	24,092,540	24,279,670	30,288,470	31,036,440

*상기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청약통장 가입요건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 적용 배제)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유의사항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철거주택 소유자 등은 적용 배제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과 그 적용이 다름)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및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호 제외) • 청약시 무주택입증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로 대체하고 당첨자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검색으로 적격자를 선정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특별공급 공통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로서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 여부와 상관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를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201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함)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태아를 포함함)
③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태아를 포함함)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소득입증 증빙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자영업자로 분류)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소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1)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 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1) 층·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자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3.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의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 청약자는 전원 추첨제로 접수됨)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에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임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 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 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신청 및 당첨자발표 일정

■ 신청 및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자격자	2015.12.02(수) 10:00~16: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당사 견본주택	* 일시 : 2015.12.02(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5.12.03(목) 08:00~17:30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일시 : 2015.12.10(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당사홈페이지 (http://www.hshuefore.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2순위	2015.12.04(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계약체결

■ 동호수 발표 및 계약 체결

구 분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동호수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계약체결 장소/시간 : 당사 견본주택(10:00 ~ 16: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
일반공급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사실 조회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조회
ARS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전국금융공동망(1369) [서비스코드 : 5#]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1순위 신청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BNK부산은행	113-2005-6677-03	국제자산신탁(주) 조용운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의 본·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해당기관장이 발행) · 서약서(별첨서식)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재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 당첨자를 판명함. 2.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됨 5.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됨 6.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입주하는 세대는 잔금완납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을"이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7.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계좌는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제외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의 납부분에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안내
•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단, 입주시 일괄납부 합니다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이 미체결될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청약신청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공부 발행 구조변경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부득이한 대지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 인쇄물, 분양 홈페이지 등에 사용 및 제시된 제품은 제조회사의 사정에 따라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 등의 사유로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택법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서 1개월 경과 발효일 또는 분양 관련,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재 사용은 주택형별로 실제 시공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여, 이로 인해 차후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해 사업에 사용된 세대외부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 시설물이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지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의 일부를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음.(단, 사업주체의 편의 및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 처리 사용을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및 주변 시설물 개발계획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업무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각종 측량성과도의 확정 성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으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변경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가동에 따른 전기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RY AREA)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각 동별, 층별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와 인접한 동은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 일부는 어린이집, 문주 등으로 인해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과 인접한 일부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대비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도로, 일조, 진입로 등), 주변개발, 조망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단지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임함.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보행로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 조망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공동주택과 분할되지 않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 지분은 차후확정 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8조 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1항 및 4항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능 2등급 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보일러, 고효율전동기, 고효율펌프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마이크로파방식)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 축	(주)계림건축사무소	1,643,725,740	VAT 포함
전 기	(주)진일기술단	549,321,000	VAT 포함
소방, 정보통신	서한컨설탄트(주)	115,000,000	VAT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15-101-0006000	198,108,976,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의의,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의 정의)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주채무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 의한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합니다)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포함합니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예시)(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기타 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또는 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금을 초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의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각호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주체 (시행사)	㈜솔로몬이앤씨	180111-0937649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부암동 협성프라자 7층)
시공회사	㈜협성건설	180111-0739376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부암동 협성프라자 6층)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http://www.hshuefore.co.kr ☎ 053-584 – 007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타 및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